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종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2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종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정진철, 문영민, 홍성룡, 최기찬,
박순규, 노승재, 장상기, 이정인,
최 선, 김경영, 오현정, 이승미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의2(준주택의 준용)에서 “공공주택”은 “공공준주택”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유권해석 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,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조건 중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‘공공이 매입하는 준주택’을 추가함. (안 제55조 제4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4항제2호 전단 중 “공공임대주택”을 “공공임대주택(공공이 매입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.</p> <p>1. 1의2. (생략)</p> <p>2.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의 <u>공공임대주택</u>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.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⑤ ~ ⑮ (생략)</p>	<p>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1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 <u>공공임대주택(공공이 매입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⑮ (현행과 같음)</p>